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김안나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근로자 생애주기적 접근
- 강지원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 배하옥 | 김유경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 장윤정 일본 노인입소시설의 유니트케어(unit care) 실시에 따른
케어워커(careworker)의 소진과 케어업무 및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 이필도 | 김미혜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 구인회 | 손병돈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엄기욱 | 정재훈 |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이수연
- 박능후 | 배미원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최성은 과세표준소득의 세율탄력성과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 정인석 | 이상직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 김기량 | 김미경 | 한국 식품 미보장 현황 및 특성
신영전
- 서 평 최은진 : 확대되는 의료서비스시장과 소비자의 선택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구인회
(서울대학교)

손병돈
(평택대학교)

엄기욱
(군산대학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이수연
(보건복지가족부)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주요용어: 외국 이주자, 영주권자, 사회복지정책, 사회통합

본 연구는 대통령실 연구용역과제,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통합방안연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교신저자: 구인회, 서울대학교(inhoeku@snu.ac.kr)

■ 투고일: 2009. 10. 19

■ 수정일: 2009. 11. 10

■ 게재확정일: 2009. 11. 12

I. 서론

한국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외국인 유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1987년에 2백만에 불과했던 외국인 입국자는 2007년 642만 명을 넘어서, 20년 동안 3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증가하여 2008년 현재 563,210명에 달한다. 외국적 동포는 2008년 현재 429,850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기체류외국인은 1995년에 110,028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0.24%에 그쳤는데, 불과 12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1.48%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혼이민자 역시 2008년 현재 121,168명으로 불과 6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자 증가와 함께 외국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그런 맥락에서 영주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전통적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었고, 우리사회에 거의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진 극히 예외적인 외국인에 한하여 귀화를 허락해왔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거주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순외국인력, 외국국적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이들의 사회부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우수인재 및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측면에서도 외국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영주자격제도가 체류자격의 일종으로 2002년 도입된 이래, 영주자격 소지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주권 취득은 귀화취득만큼 어렵게 운용되고 있다. ‘고용, 소득, 언어, 범죄유무’가 영주권 취득과 귀화에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어서 영주권의 신청과 귀화 신청이 수월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은 출입국관리상의 문제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된 전반적 제도마련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외국인이 한국의 영주권 취득을 선호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들은 영주권자에 대해서 별도의 적용 규정이 없으며, 다른 단기체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만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영주권 제도 등의 이민정책이 외국의 우수인력의 유치를 통한 외국인 체류자의 균형적 구성, 이주 외국인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이라는 목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 등 이민선진국가나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영주권제도와 영주권자에 대한 복지, 세제, 입국 시 편의, 국적취득과의 연계, 교육제도 등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하여 외국인 체류자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현재의 영주권제도와 귀화제도를 이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과정에 놓인 연속적 단계로서 위치 지우는 제도적 준비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함과 함께 영주권자 등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제도적 준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의 현행 영주권 관련 법·제도 및 영주권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실태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서 영주권자의 이민법상 지위와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처우에 대한 사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선진국가의 영주권자 대상 사회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외국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II. 한국의 영주권 제도와 사회복지정책

1. 영주권 제도와 외국인 체류 현황

가. 영주권 제도 현황

2001년 이전까지 한국에는 미국식 영주권 제도가 없는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그 중 장기체류외국인은 5년 단위의 거주체류자격(F-2비자)을 발급 받아 국내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존법령상 거주체류자격(F-2비자) 발급 요건은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1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F-2비자로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약 2만 4천 명 정도였고 이 중 대만국적을 가진 사람이 92%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에 2001년 9월 11일 정대철 의원 등 24인이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장기간 거주를 통하여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과 유대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활동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 합리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법무부, 2008).

하지만 우리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등 현행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외국인에 관한 기본적 법률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들의 법적 지위 개선을 도모하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의 검토 의견을 대체로 수용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2002년 4월 18일 대통령령17579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서 화교를 비롯한 5년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이순태, 2007). 즉, 영주권을 국적과 연계시키는 미국식 영주권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해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F-5이라는 새로운 자격을 추가함으로써 영주지위를 신설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계속적으로 영주권자들의 자격부여, 권리 및 혜택 등 영주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8년 8월 3일부터 투자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주제도 개선은 전문 직종 종사 및 연금 수혜 동포,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우수 동포의 해외 유출을 막는 동시에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 등에게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해줘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무부, 2008).

하지만 보완된 영주권 제도 역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경험이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영주권 제도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에 비해 훨씬 용이하고 영주권을 우선 부여한 후 문화적 적응이 이루어진 외국인에게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수는 2004년 509명, 2005년에는 668명, 2006년에는 2,718명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귀화자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차대운, 2007). 이것은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때로는 국적을 획득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데다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가 귀화제도와 어떤 의미 있는 연관도 가지지 못해 영주권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나. 외국인 체류자 현황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외국인 유입을 경험하였다. 1987년에 2백만에 불과했던 외국인 입국자는 2007년 642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874,936명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38.7%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865,294명으로 17.9%를 차지한다. 2007년 대비 일본은 1.5%, 중국은 13.5% 증가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자격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 현재 563,210명으로 단순기능인력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90%에 육박한다.

체류 외국인 중에 외국적 동포는 2006년 267,436명, 2007년에는 365,732명, 2008년 현재 429,850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86,527명으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방문취업이 306,623명, 재외동포가 40,630명, 방문동거가 13,740명, 기타가 68,857명이다.

체류외국인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장기체류외국인과 결혼 이민자이다. 장기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투자자 등 수년 간 우리나라에 머물 사람들이다(차용호, 2008). 1995년에 외국인 장기 체류자는 110,028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0.24%에 그쳤는데, 불과 12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이 주민등록 인구 4,913만 명의 1.48%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전 인구에서 외국인 장기 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그 증가 속도가 무척 빠른 실정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역시 2002년 34,710명에서 2008년 현재 121,168명으로 불과 6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주권자도 6,022명에서 15,567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하였다(법무부, 2008).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게 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의 결혼 및 자녀 출산으로 생활기반을 대한민국에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기체류자와 그 자녀는 귀화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권리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법무부, 2008).

2. 영주권자의 사회적 지위

통상적으로 영주권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과정의 최종 단계로서 귀화를 통해 완전한 시민이 되기 직전의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보통 영주권에는 ① 영구적 혹은 장기적인 체류의 권리, ② 법에 의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 ③ 구직, 취업, 창업의 권리, ④ 기

술 습득 및 교육을 받을 권리, ⑤ 사회 보장 혜택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⑥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치적 권리 등이 주 내용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영주권은 ①과 ②의 권리는 나름대로 보장하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③, ④, ⑤, ⑥의 권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다(법무부,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주권자는 신분존속기간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면제되며, 1년 이내 출국 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내란의 죄 등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퇴거 되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는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투표소환권을 갖는다. 영주권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지만, 교육, 근로와 병역의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법무부, 2008).

사회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법 제8조)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이 관련 하위 법률에 따라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법 제9조)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 즉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8조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제8조)에게 사회보장제도 관련법들의 규정 내용에 의하여 권리자격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내국민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그들의 모국이 한국과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나 협약을 맺은 경우로 사회보장수급권이 한정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 법률인 개별 사회복지법(예컨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과 같은 개별 법률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의 내용들이 결정되는 것이다(문순영, 2007).

현재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사회기본권이 사실상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사회기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각 법률에서도 영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에의 적용’ 혹은 ‘외국인에 대한 특례’라는 조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회복지제도에서 영주권자의 적용에 관한 고찰은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가.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 수 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이나 사망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회보험이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외국인 적용조항을 두게 되면서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적용에서 상호주의 원칙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된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자는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둘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및 동반(F-3)의 체류자격이 있고, 직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유학·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험이다. 내국인의 경우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입자격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¹⁾ 등 내국인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해 가입시키는 임의적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 일부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8종류가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당연적용 된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불법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즉, 불법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정의 벌칙이 부과될 뿐,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이상윤, 2002).

5)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외국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공공부조

현행 법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법체계에 따른 법령 외에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른 법령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인 등을 통해 국적 취득이 예정된 자와 그 자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국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12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의 외국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만 수급자 범위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수급자가 된다.

2)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때 등을 포함한 여러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특별히 외국인에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킨다.

3)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제공받는 다양한 지원서비스 및 수당 중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와 노인빈곤완화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써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된다.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는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바,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5)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현행 사회안전망은 2원적 구조(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기존 사회안전망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3중구조로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다.

법률조항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외국인은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이 없다. 하지만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세제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즉,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만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다. 사회복지서비스²⁾

1)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교육, 상담, 문화정서 및 양육교육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도록 되어있다.

2) 성매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는 외국인 여성 지원 시설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시설은 외국인여성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성매매 외국인피해자를 위한 보호소가 2곳(안산, 창원)이 개소되었고, 2006년에 1개소(서울)가 추가되어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도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보호 시설로 외국인 보호시설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시설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데, 현재 천안과 인천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문순영, 2007).

3) 의료지원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³⁾·

2) 본 내용은 법제처(www.klaw.go.kr)에서 외국인에 적용되는 법률을 모두 검색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구분에 맞는 내용만 기록하였다.

3)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함.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18세 미만의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인 자를 말함(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⁴⁾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또 한부모가족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결: 현 영주권자 사회정책의 한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화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귀화과정은 ‘단기체류 → 영주권 → 시민권’이라는 사회통합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 그 경로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민사회에서는 입국과 함께 영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차별성과 더불어 대체적으로 귀화라는 궁극적인 사회통합의 목표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사회통제가 이루어졌고 한국 사회에 거의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진 극히 예외적인 외국인에 한하여 귀화를 허락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영주권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영주권과 귀화가 같은 차원에서 선택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이주외국인은 단기체류자격의 취득 후 영주권을 선택하는 경로를 밟거나 귀화를 위한 경로를 택하는 두 갈래 길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귀화가 궁극적인 사회통합의 과정이고 따라서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참정권을 부여받는 완전한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원칙과 무관하게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영주권제도와 귀화제도는 과도기적인 ‘두 갈래 길’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한 과정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법무부, 2008).

4)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 혼 제외)한 상태(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를 포함)에 있는 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을 말한다.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18세 미만의 상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자를 말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정책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영주권은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그다지 큰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것은 영주권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행 영주권은 출입국 상의 편의와 체류의 안정성 이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비교하여 복지, 직업교육, 직업선택, 취업 상의 권리들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관련 현행법에서도 ‘영주권자에 대한 특례’와 같은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영주권자’라는 법률상의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 규정이 아니라 단기체류 외국인과 차별성 없이 ‘외국인’으로 포괄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복지대상으로 분류하여, 법률적으로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외국인투자자, 재한화교 등의 영주권자와 다르게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및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III.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 영주권자 사회정책 비교

1. 이민정책의 비교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사회통제가 이루어졌고, 한국 사회에 거의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진 극히 예외적인 외국인에 한하여 귀화를 허락해왔다. 2001년까지 영주권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전문기술인력취업제도, 고용허가제도와 지금은 폐지된 산업연수제도 등을 통한 취업 목적의 외국 인력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영주권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2년부터 화교 등 5년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8월부터는 전문 직종 종사자, 투자자, 연금수혜 동포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영주권 취득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영주권 취득이 어렵고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논의 등으로 영주권 제도의 확대, 영주권자 사회적 처우의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건설된 나라로서 전통적으로 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 망명자를 수용하고 영주권을 확대하는 정책노선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또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잠재적인 시민으로 간주되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간에 사회복지 혜택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자 빈곤층의 증대, 불법이민자의 증대에

대한 반발여론이 강화되면서 1996년 복지법 개정 이후에는 불법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빈곤층의 이민과 복지의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가 이루어졌다. 영주권자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수급자격을 제한하였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한시적 체류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독일은 외국인민자 중 국적 취득자가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체류 외국인의 수도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등 외국이민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회이다. 외국인 체류자의 다수는 유럽연합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터키와 과거 유교 출신의 외국인도 상당수에 달한다. 유럽연합 시민거주권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 국민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비유럽연합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착허가와 한시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체류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영주권에 해당되는 정착허가의 경우 생계보장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의료보험료 납부실적이 있을 것, 취업허가를 받았을 것 등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착허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일단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노동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된다. 즉 내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으며 취업여부가 사회복지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2007년 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가 약 215만 명으로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저출

표 1. 이민정책과 이민자 사회정책의 특징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민정책 특성	영주권제도 비활성화.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예정. 영주권자에 대한 별도의 사회정책 부재.	전통적으로 외국인민, 영주권 취득 확대 방 향. 시민권자와 영주권 자 간 사회복지혜택 차 이 두지 않음. 1996년 복지법 개정 이후 불법 이민 통제 강화, 빈곤 층 이민 제한.	전문직이나 숙련노동 종사 외국인은 적극 수 용, 비숙련 노동자는 일본계 외국인에게 정 주권 부여하는 방식으 로 수용. 2006년 노동자정책과 체류관리 관점의 외 국인 정책에서 생활 인으로서의 외국인 종합정책	유럽연합 소속 국민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동 등한 대우. 비유럽연합 국가 시민 대상으로 영 주권(정착허가), 한시 적 체류자격(체류허 가) 부여.
이민자 사회정책의 특징	사회보험은 외국인 적 용.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한국인 자 녀 양육하는 결혼이민 여성에게 대해서만 지원.	사회보험은 영주권자, 취업목적 체류자에 적 용. 공공부조는 1996 년 법개정으로 이민자 에 대한 공공부조 적용 을 제한.	198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비 준 발효로 국내의 평등 원칙에 따라 합법적 체 류 외국인에 대해 일본 인과 동등하게 사회복 지 적용 원칙. 공공부 조는 제한.	취업 활동을 전제로 한 내외국인 차별 없는 급 여 제공 원칙에 따라, 모든 취업활동자는 사 회보험 적용. 공공부조 는 모든 국내 거주자 대상.

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심화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 중에서 영주자가 40.4%, 일본인의 배우자가 11.9%, 외국인 동포로 이루어진 정주자가 12.5% 등으로 영구적 혹은 장기적 체류자가 65.5%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전문직, 숙련노동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이고 비숙련 노동자는 일본계 외국인 동포에 정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일본은 최근 노동자정책과 체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외국인정책을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 종합 대책으로 확대하고 있다. 198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비준, 발효한 이후로는 국내의 평등 원칙에 따라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동등하게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등하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생활보호제도 등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자격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의 이민정책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영주권을 중심으로 한 이민정책이 부재한 상태였다가 이제 비로소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며, 이민정책을 체계화하려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는 통일된 지위에 기반 한 대상자 규정이 아예 없다. 단지 우리 사회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서만 특례적인 조항(영주권자라는 이민자의 지위와는 무관하게)을 두고 있을 뿐이다. 반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간 사회적 권리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빈곤층 이민의 증대 등 이민 확대가 초래한 부작용으로 1996년 이후 영주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환하였다. 독일, 일본의 이민 정책은 일단 영주권 취득 조건은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일단 영주권자에게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비교

우리나라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의 가입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누구나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이 적용대상이 된다. 단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 보호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내외국인의 차이 없이 영주권자와 한시적 체류자의 차이 없이 소득활동 혹은 취업활동을 근거로 적용된다. 연금보험에 해당하는 OASDI는

표 2. 사회보험제도의 외국인 적용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연금 보험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가입 허용.	OASDI의 가입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차이 없음.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한시적 체류자도 적용.	외국인 등락한 적법 체류자로서 체류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노령연금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탈퇴일시금 지급. 주요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중.	취업근로자는 모두 적용. 불법노동 외국인 적발 협력 규정.
의료 보험	외국인 누구나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	Medicare 가입에 영주권자, 시민권자 차이 없음. 한시적 체류자 제외.	198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 적용.	체류허가나 정착허가 받은 날부터 가입대상.
고용 보험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임의가입.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한시적 체류자 대상 적용.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적용 대상.	취업근로자 모두 적용. 교육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체류자, 교육종료 후 독일을 떠나야 하는 의무자, 출신국 보험대상자 제외.
산재 보험	불법체류자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당연 적용.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한시적 체류자 대상 적용.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	취업근로자는 모두 적용. 불법노동 외국인 적발 협력 규정.
장기요양 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적용.	해당 제도 없음.	개호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가입조건.	취업근로자 모두 적용.
기타	아동수당 없음.	아동수당 없음.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은 적법한 체류 외국인 적용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취업활동 근거로 지급.

미국 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영구권자, 한시적 체류자 사이에 차이 없이 적용된다. 단 한시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는 취업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메디케이드의 가입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시적 체류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한시 체류자에 대한 자격제한은 메디케이드가 공적 의료보험이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피고용상태의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모두 가입대상이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한시 체류자도 가입 대상이 된다.

독일에서는 사회복지혜택은 취업노동을 근거로 한 보상원칙에 따라 주어진다. 독일의 모든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수발보험의 5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받은 날부터 가입의무가 발생한다. 실업보험의 경우에는 교육목적 입국자 중 일부와 출신국 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

일본에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에겐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이 일본인과 동등하게 강제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을 통해 적용되고, 그 외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한 적법한 체류자로서 체류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불법체류자는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또한 체류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 적용된다.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은 국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가입기간 25년을 충족할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해 탈퇴일시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며, 주요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고용보험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 보호 성격이 강하여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처럼 사회보험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 일본, 독일 모두 영주권자의 적용에 큰 차이는 없다.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이 보험료 납입을 조건으로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영주권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국가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 비교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어 외국인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단 혼인 등을 통해 국적취득이 예정된 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등에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도입하였다. 이 조항을 통해 외국인 중 대한민국 배우자와 결혼 중이거나 이혼, 사별한 결혼이민여성으로서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빈곤층은 수급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결혼이민여성은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즉,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적용에서 배제되고 일부 서비스가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서비스 등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혜택도 제공된다. 결혼이민여성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여성 및 그 자녀 등에 대해서 입원 및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국 공공부조 제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자격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복지 개혁 이후에는 응급의료서비스, 임대료 보조, 에너지 지원, 현물 비상재해 구제, 위기개입, 교육부조, 무료급식 등을 제외한 많은 공공부조 제도에서는 거주 기간이 5년을 지나지 않은 영주권자에 대해서 급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SSI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영주권자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한시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응급진료, 단기 현물 비상재해 구제, 무료급식소, 위기개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부조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단, EITC의 경우 조세제도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 목적의 한시 체류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은 취업활동 여부와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 국내에 거주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독일의 사회법에는 체류 외국인이 생계보호, 질병 시 도움, 임신·모성 보호, 수발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내외국인간의 차별이 존재하기는 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항상 존재한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보험조합이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 근로자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표 3.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외국인 적용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음. 단 혼인 등을 통해 국적취득이 예정된 자와 그 자녀는 적용.	SSI에서는 영주권자, 한시적 체류자 제외. 난민/망명자 7년간 급여. TANF, Food Stamps는 거주 5년 지난 영주권자 자격. 한시적 체류자 제외. 난민/망명자 7년간 급여. Medicaid는 영주권자는 첫 5년간은 응급서비스 자격, 그 후는 주(state)의 재량. 입대료보조, 에너지비용 지원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차이 없음. 한시적 체류자는 제외. EITC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한시적 체류자 대상 적용.	생활보호법 외국인 수급권 불인정.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권 인정하지만, 특별영주자, 영주자 등의 영주권자 중심으로 한정. 취로자격 있는 외국인, 취로자격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수급권 없음. 긴급 의료지원을 위해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전국 구급구명센터 미지불의료비 상환제도 도입.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은 취업활동과 관계 없이 독일 국내에 거주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 대상. 생계보호, 질병 시 도움, 임신·모성 보호, 수발 지원.
사회 복지 서비스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음. 단 혼인 등을 통해 국적취득이 예정된 자와 그 자녀는 적용.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포함.	영주권자 대상: 메디케어 응급의료, 단기 현물 비상재해 구제, 학교 급식, 전염병 예방접종, 입양부조, 교육부조, Head Start, 무료급식소, 위기상담 및 개입, 단기보호시설.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케어 응급진료, 단기 현물 비상재해 구제, 전염병 예방접종, 무료급식소, 위기상담 및 개입, 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는 적절한 체류 외국인 적용.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보건법에 의한 긴급 의료지원 및 정신질환 입원조치 등은 불법체류자도 대상.	사회서비스의 주요 비용부담 주체가 사회보험조합이어서 취업근로자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서비스대상에 포함.

일본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취로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의 적법성에 상관없이 수급권으로 배제된다. 단, 미지불의료비 상

환제도와 같은 긴급 의료지원은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영주권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예 영주권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단지 결혼이민자라는 집단에 대해서만 특례조항을 두어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영주권자들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이민정책이 비체계적이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에 이민정책의 관점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공공부조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주권자의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시민권자와 비교하여 영주권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응급의료, 재해구조 및 아동 관련 급여에 대해서만 영주권자에게 급여자격을 부여한다. 독일, 일본은 공공부조의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간 차이가 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도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IV. 결론: 국내 영주권자 사회정책에 대한 함의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귀화과정은 ‘단기체류-영주권-시민권’이라는 사회통합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이민사회에서는 입국과 함께 영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적으로 귀화라는 궁극적인 사회통합의 목표점이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전통적으로 한국인과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사회통제를 이루는 방향에서 유지되었고, 한국사회에 거의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진 극히 예외적인 외국인에 한하여 귀화를 허락해왔다. 최근 영주권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영주권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즉,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히 체감할 수 있는 특혜가 없어, 영주권제도의 활성화와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현재의 영주권제도와 귀화제도를 이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과정에 놓인 연속적 단계로서 위치 지우는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기본방향과 사회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외국 사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과 쟁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선 확인된 사실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에서 중요한 원리적 차이

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로서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충당되며,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급여자격이 부여된다.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는 그 재원이 일반조세에서 충당되며 수혜자는 특별한 사전적 기여가 없이 수급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사회보험 가입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구분이 없으며, 취업 목적의 한시적 체류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물론 다른 모든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독일과 같은 많은 유럽의 선진산업국가들에서는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 대해 비기여적 급여의 자격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급여인 SSI의 수급자격을 주지 않으며 다른 급여는 일정 거주기간을 지난 후에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미국은 이민자에 대한 지원에서 이민자의 스폰서의 의무를 증대하는 방식의 통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응급이나 비상재해, 급식이나 교육과 같은 필수적인 위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외국인 비차별의 원칙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비기여적 급여에서는 영주권자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긴급의료지원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단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적법한 체류 외국인 모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적용 조항이 전혀 없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여적 급여제도인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험 가입의 법적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국민연금의 외국인 적용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시민권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일반조세를 통한 지원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국적 취득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여타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인 자격의 부여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의 실질적인 가입을 촉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사회복지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급여가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일본,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 서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복지개혁 이후 영주권자에 대한 공공부조급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도에서 5년의 거주기간을 지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이 영주권제도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 이외의 영주권자에 대해서 공공부조 급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비시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확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반대론이 존재한다. 첫째,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회복지급여가 가난한 외국인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둘째, 비시민권자가 복지급여 수급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면 전체 복지제도와 개방적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복지급여를 시민권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귀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Aleinikoff and Klusmeyer, 2002).

그러나 복지급여를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자는 납세를 하는 등 국가에 대한 의무와 기여를 수행하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차별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내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에서의 비차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비시민권자에 대해 공공부조 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통합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민자들은 시민권자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은 건강, 학업 등 주요한 발달 영역에서 지체되거나 문제를 안게 된다. 또 보육, 고용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는 이민자의 취업과 근로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바, 이들 서비스에 대한 비시민권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비시민권자에 대한 급여 제한이 시민권자 아동에 대한 급여제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시민권자가 시

민권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부모의 급여 제한은 같은 가족 내에 있는 자녀의 복지를 위협하기 때문이다(Aleinikoff and Klusmeyer, 2002).

이렇게 비시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확대에는 찬성과 반대론이 존재하나, 국가간 비교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영주권자 혹은 영주가 예상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제한은 이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보다는 늦추는 효과가 있으며,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이 시민권 취득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는다(Aleinikoff and Klusmeyer, 2002). 이러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대상 사회정책 발전의 첫 단계로서 우선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 영주권자에 대한 복지급여의 확장은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이민정책과의 관계에서 보아도 시의적절하다.

구인회는 서울대학교,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빈곤, 사회보장이며, 현재 빈곤과 자활사업, 사회복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inhoeku@snu.ac.kr).

손병돈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평택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빈곤, 사회보장이며, 현재 빈곤,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bdson@ptuniv.ac.kr).

엄기옥은 일본 사회사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일본사회복지이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kwum@kunsan.ac.kr).

정재훈은 서울대학교, 독일 트리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여성복지, 사회서비스이며, 현재 독일 사회서비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jung4202@hanamil.net).

이수연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다문화가족복지이며, 현재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sylph7@snu.ac.kr).

참고문헌

-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pp.109-142.
- 법무부(2008). 대한민국의 국적과 영주권 제도: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용역보고서.
-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0월호.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08).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상윤(200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저스티스*, 35(6), pp.47-60.
- 이순태(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차대운(2007). 영주 비자(F-5) 외국인 1만 5천명 돌파. *연합뉴스*, 7월 4일자.
- 차용호(2008).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관. 법무부.
- Aleinikoff and Klusmeyer. (2002). *Citizenship Policies for an Age of Migra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hington D.C.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Exa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Permanent Residents to Social Welfare Benefits

Ku, In-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n, Byong-Don

(Pyeongtaek University)

Um, Ki-Wook

(Kunsan National University)

Jung, Jae-Hoon

(Seoul Women's University)

Lee, Soo-Youn

(Pyeongtaek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Keywords : Immigrants, Permanent Residency,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Integration

2009년 제29권 2호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인쇄일 | 2009년 12월 15일

발행일 | 2009년 12월 31일

발행인 | 김용하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 02-380-8000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제작 | 예원기획

정가 | 5,000원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Anna Kim**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y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 Jiwon Kang** Korea's Policy on Single-parent Household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 Bae, Hwa-ok | Kim, Yu-Kyung**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 Jang, Yun-Jeong** The Impact of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on Care Workers' Burnout, Care Work and Care Environments in Japan's Special Nursing Homes
- Lee Pil-Do | Kim Mi-Hye** A Study of Standard Funeral Service Charge
- Ku, In-hoe | Shon, Byong-Don | Um, Ki-Wook | Jung, Jae-Hoon | Lee, Soo-You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Exa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Permanent Residents to Social Welfare Benefits
- Park, Neung Hoo | Bae, Mi Won**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 Yong-Gab Le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and Their Lesson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 Seng-Eun Choi**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and Deadweight Loss
- In Suk Cheong | Sangjik Lee** A Study on an Incentive System for Reduc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orea
- Kirang Kim | Mi Kyung Kim | Young-Jeon Shin** Household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